

## ▶ 서론

### 1. 부패란 무엇인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부패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반부패 국제조약인 유엔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횡령·배임과 그 밖의 재산 유용, 영향력에 의한 거래, 직권 남용, 부정축재, 민간부문의 뇌물수수 및 횡령, 범죄 수익의 세탁 및 은닉, 사범방해를 범죄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협약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부정부패 행위가 열거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로 간주된다.

부패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구매 담당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계약 수주를 대가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할 수 있다. 이러한 부패행위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한다. 부패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잠재적인 이익이 크고, 그러한 행위가 발각될 위험이 낮을 때 발생할 확률이 높다. 다음은 부패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다.

- 불명확하고 복잡하며 수시로 변경되는 법과 규정
- 일관성이 없으며 부당한 법과 규정의 집행
- 공공 또는 민간 부문 의사결정자들의 투명성 및 책임성 결여
- 시장의 경쟁 부족
- 상품과 서비스의 높은 가치에 비해 낮은 임금



부패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부패에 대한 인식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부패행위 자체는 모든 국가에서 불법이지만 많은 부분이 각 사회의 사업 관행 및 법률의 정의와 집행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불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기업이라면 모호한 법률과 예측할 수 없는 법률의 집행, 성문법보다 더 강력한 기존의 사업 관행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자신이 부패행위를 자행(또는 모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 1) 모든 관계자에게 이 사실에 대해 말하고 거리낌없이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 2) 내일 언론에 이러한 행동이 보도되어도 괜찮은가?

두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실행으로 옮기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 이미지 출처: Business Anti-Corruption Portal([www.business-anti-corruption.com](http://www.business-anti-corruption.com))

## 2. 부패의 유형

● **뇌물:** 불법, 비윤리적 행동 혹은 배임과 같은 행위를 유인하거나 특정 행동을 막기 위해 특혜를 제공, 약속, 공여, 수락, 청탁하는 것. 뇌물은 금전 혹은 현물의 과도한 부당 혜택일 수 있고 직접 혹은 중개인을 통해 제공될 수 있음. 사례금, 급행료, 선물, 접대, 경비제공, 정치·자선 기부, 후원, 홍보성 경비 등 기업의 리스크 평가에서 뇌물이 가장 널리 자행되고 있는 형태로 고려되어야 함

- **사례금(뒷돈):** 기업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행해지는 뇌물 행위. 뒷돈 거래는 구매, 계약 체결 혹은 수주 결정권이 있는 부서에서 발생. 공급업체는 계약 금액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중개자를 통해 사례금 명목으로 뇌물 지급

- **급행료:** 법적 권리를 가진 통상적인 과정 또는 필수적인 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거나 촉진하도록 지불하는 소규모의 뇌물을 뜻함. 급행료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의 세관 출하 승인을 얻거나 입국심사 통과를 요청하는 등의 상황에서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 **자선·정치 기부, 후원, 출장, 홍보성 경비:** 합법적 활동에 속하지만 뇌물을 위한 속임수로 악용될 가능성 있음. 특히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과 같은 다수 국가의 해외 뇌물 범죄에 따르면,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특혜라고 판단되는 거래와 결부된 리스크에 주목해야 함

● **영향력 행사에 의한 거래:** 부적절하게 실재적·잠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부정한 이익을 강요 또는 수수하는 행위

● **이해 상충:** 해당 기업에 대한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상충되는 이해관계, 의무 혹은 책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 이해 상충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패되었음을 뜻하지는 않지만 임직원 혹은 계약 관계에 있는 제 3자가 또 다른 이해와 관련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 부패 발생 가능

● **담합:**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입찰 담합, 카르텔, 가격 담합 등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

- **입찰 담합:** 구매자가 경쟁적 입찰을 통해 용역이나 재화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경쟁자들이 공모하여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 기본적으로 입찰 경쟁자들은 경쟁 입찰 과정에서 계약서에 최저 입찰가를 누가 제출할 것인지 미리 합의함

- **카르텔:** 기업들간에 불법·부정행위를 저지르기로 비밀리에 합의하거나 공모하는 것. 전형적으로 카르텔은 가격 담합, 정보 공유 혹은 생산과 공급에 할당량을 설정하는 시장 담합과 관련 있음

- **가격 담합:** 용역이나 재화의 가격을 상승, 조정 혹은 유지하기 위해 경쟁자들간 합의하는 것. 경쟁자들이 반드시 정확히 동일한 가격을 부과하고 합의하거나 특정 산업의 모든 경쟁자가 공모에 가담하지는 않음. 가격 담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어떠한 종류의 합의든 해당 경쟁법에 위반될 가능성 있음

- 
- **회전문 인사:** 고위급 직원이 공공 분야에서 민간 분야로 보직을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회전문 인사가 우려되는 주된 이유는 기업의 관행이 어떻게 공직의 공정성 및 윤리성을 해칠 수 있는지와 연관 있음. 기업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 일자리 제공을 논의 혹은 약속해 주거나 공무원 출신을 이사진이나, 직원, 고문으로 앉히는 등의 행위에는 리스크가 수반될 가능성 있음
  - **대가성 임용:** 자질 혹은 자격과 상관없이 가까운 관계나 연줄을 이유로 특정 인물이 직업이나 혜택의 수혜자로 선정되는 편애주의
  - **불법적 정보 중개:**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한 기업의 기밀 정보를 중개하는 행위
  - **내부자 거래:** 거래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비공개 자료 정보를 인지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로 이는 정보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 **탈세:** 해당 지역의 납세자인 개인, 기업, 트러스트가 사법관할권의 정부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세금을 불법적으로 미지불 하는 경우
  - **돈세탁:** 해당 자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인지하면서, 그 자산의 실제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 또는 소유권이나 그에 대한 권리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
- 



### 3. 부패의 리스크와 기회



#### ● 부패의 리스크

8



#### 윤리적 리스크

- 본질적으로 잘못된 행위로서의 부패
-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청렴성 약화, 조직의 도덕성 감소



#### 법적 리스크

- 반부패법 신설 및 강화 추세: 민·형사상 처벌 가능
- 각국의 부패 척결 의지 증대 및 법적 처벌 확산
- 부패가 주요 정치 이슈로 대두
-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원 (OECD, UNODC, World Bank)



#### 경제적 리스크

- 부패로 인한 기업 경영 및 조달 비용 증가
- 경영 성과 감소,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저해 및 질적 하락
- 상당한 규모의 벌금 부과 및 계약 해지, 거래 금지 등 경제적 손실 발생
- 소비자 및 투자자의 구매 및 투자 감소



#### 평판 리스크

- 부패로 인한 기업 평판 손실, 브랜드 평판 관리의 필요 증대
- 법 준수에 관한 소극적 태도, 높은 윤리규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활동과 정책을 펼치는 기업은 높은 평판 리스크에 노출



● 반부패 노력의 기회



뇌물 요구 감소

- '청렴한 이미지' 구축으로 지속적인 뇌물 요구 감소, 지대추구행위 방지
- 정직한 비즈니스 기준 확립, 거래 간 확실성 제공
- 기업의 부패 무관용 정책 강화
- 높은 윤리규범 기준으로 기업 명성 확보



신뢰 형성

- 부패방지 법규의 효과적인 준수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근로자, 투자자, 정부, 고객 등) 사이에 기업에 대한 신뢰 형성
- 청렴하고 정직한 기업 활동에 대한 고객 및 근로자 인식 확대



지속가능한 경영

- 반부패 규범 기준 및 행동 도입으로 정직한 비즈니스 기준 확립
- 기업의 인재 확보 및 유지
- 기업 거래의 확실성, 기업 지속가능성 증대
- 기업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

## 4.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패의 영향

부패에 연루될 개연성은 국가의 공적 제도(법률 제도, 법원, 경찰, 금융기관 등)의 수준과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부패 발생 가능성과 큰 상관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부패행위로 인해 기소될 위험이 낮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사법부가 높은 형량 또는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면 부패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용 편익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게 부패는 경제적 이슈이며, 부패행위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이 부패행위의 적발로 발생할 손실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 및 지역별

규제와 형식적인 절차로 인한 지연은 곧 비용의 발생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비용이 대기업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결과 중소기업은 절차의 속도를 높이고 지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종종 부패행위에 의지하게 된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뇌물 요구에 직면할 때 이를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적거나 없다.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패를 일상업무의 한 부분으로 보고, 부패 없이 생존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대기업에 비해 부패의 영향을 받기 쉽다.

10

### 중소기업의 구조

비교적 격식 없는 회사 내 분위기와 긴밀한 직원 관계는 부패를 쉽게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단기적인 비전 및 관점

대기업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패 관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역량을 가진 반면,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를 중심으로 하는 단기적 비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중소기업은 부패행위로 인한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한 나머지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숨겨진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한정된 자본

중소기업은 뇌물 요구에 대한 거절이 기업의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뇌물제공이나 비합리적인 지급을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

### 미미한 영향력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급행료나 사례금과 같은 요구를 거절할 협상력과 영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부패 공무원들은 부패에 대한 중소기업의 저항 및 반대조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규율을 위반했을 경우 기업 관리자가 정당한 대우를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자본 구조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공개 상장으로 엄격한 증권 거래 규율의 대상이 되며, 정보가 공개되고 미디어에 자주 언급되는 등 대중의 인식이 기업의 전망에 매우 중요한 반면, 중소기업은 대체로 경영진, 이사회를 분리하는 확실한 경계가 없으며 정보가 통제되어 부패에 취약할 수 있다.

현재까지 부패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날 전 세계 기업 중 약 95%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가 대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공급업체 이거나 국내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신해 활동하는 대리인이나 유통회사

일 수도 있으며, 합작사업의 파트너일 수도 있다. 당연히 해당 글로벌 기업은 파트너사에게 자신들의 엄격한 준법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기대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기술 표준, 품질, 근로 조건, 보건 및 안전은 물론이며 국내 반부패법 및 해당 기업이 정한 글로벌 파트너의 준법·윤리 규정까지 전부 준수해야 함을 뜻한다.

● **글로벌 기업이 보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위험 징후는 무엇인가?**

- 소유권에 관해 투명성이 결여됨
- 소유자나 경영진 중 공무원이 있음
- 정부 관리의 강력한 추천을 받은 적이 있음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음
- 공시서류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지 않음
- 규제가 허술한 역외 사법권에 등록되어 있음
- 과거 불법적이거나 수상한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음
- 관련 분야의 경험이 거의 없거나 관련 업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나 성공 보수 같은 이례적인 지불 조건을 요구함
- 정부 관리가 연계된 자선 단체를 운영하거나 그곳에 기부함

이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 중소기업에 있어 뇌물과 부패가 우려의 원인이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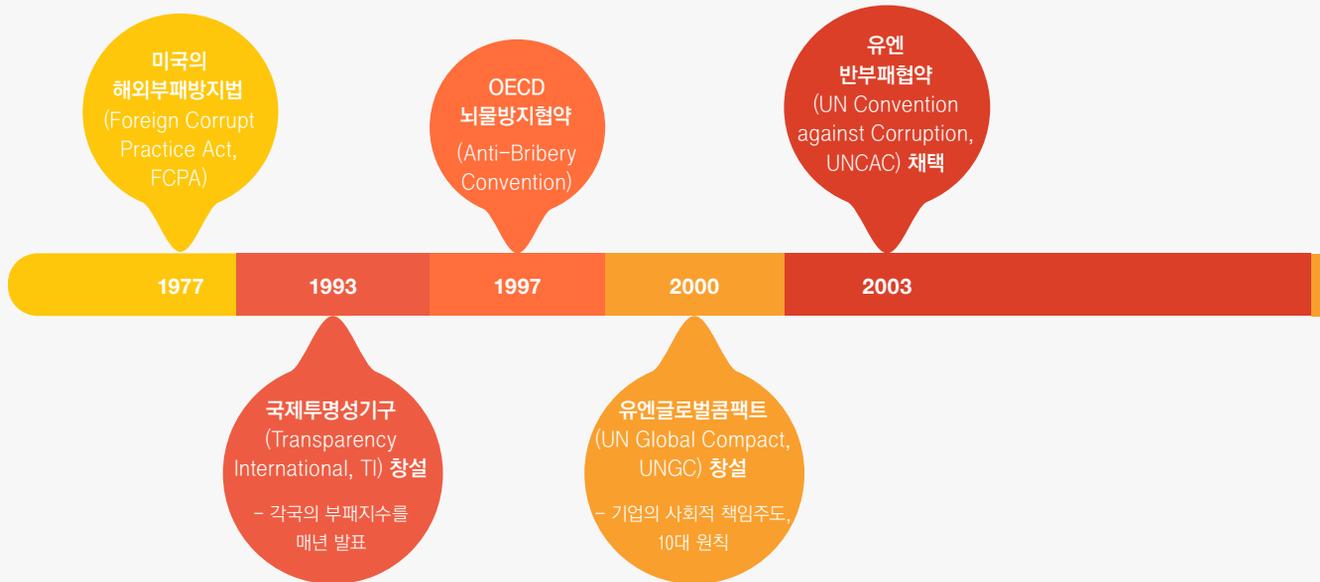
국제공인회계사협회(The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ACCA)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패 인식 조사에 따르면<sup>1</sup>, 글로벌 서베이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 “부패는 상거래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합니다.”
- “부패는 비즈니스 비용을 높이고, 이로 인해 비즈니스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합니다. 한번 부패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그 다음 번에도 예상된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됩니다.”
- “중소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 “비용, 규제 리스크 및 사법조치를 증가시킵니다.”
- “뇌물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다른 중소기업의 비즈니스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히 개도국에 있어 큰 우려의 원인이 됩니다.”
- “뇌물과 부패로 인해 해외 투자가 무산될 위험이 큼니다.”
- “모든 비즈니스가 부패의 영향을 받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 결과가 특히 더 클 수 있습니다.”

<sup>1</sup> Combating bribery in the SME sector (2013), ACCA

## ▶ 반부패 흐름 및 가이드라인

### 1. 글로벌 반부패법 및 협약 (Global Anti-Corruption Legal Framework)



12



#### 1)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 ● 제정 배경

부패와 관련된 최초의 국제법으로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 수사과정에서 미국기업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기업이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1977년 제정되었다.

##### ● 적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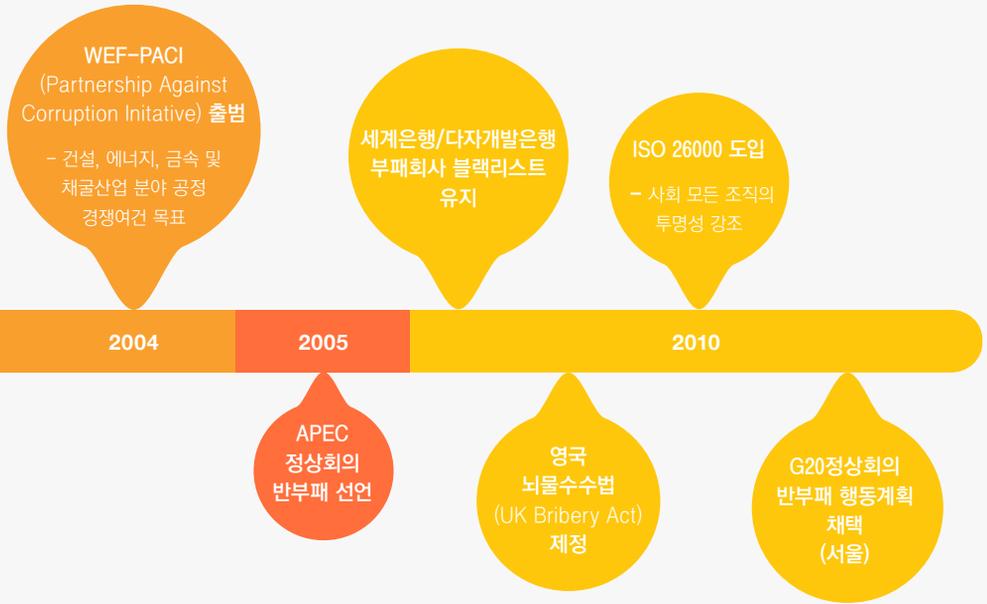
FCPA는 크게 뇌물금지조항과 회계관련 규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뇌물금지조항은 ①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 ②미국을 주요 사업 소재지로 하거나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③그 밖의 인(person)이 외국 공무원에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 법적 제재

동 법 위반 시 법인과 개인은 벌금과 징역형 및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뇌물금지 조항을 위반한 기업의 경우 각각의 위반 사항당 최고 2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의 경우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형과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벌금의 액수와 징역형의 강도가 매우 강한 편이다.

##### ● 최근 동향

최근 미국 법무부와 SEC는 FCPA를 더욱 엄격하고 강력하게 집행할 것임을 공표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실제 처벌 건수와 액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주요 사건들이 대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중소기업으로 수사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이 보이며,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석유·가스 등 부패구조가 드러난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하는 등 FCPA 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방지를 위한 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OECD Anti-Bribery Convention)**

● **의의**

국제상거래상 뇌물공여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전세계적인 자원의 흐름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본 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키로 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로,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 (뇌물수수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

●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죄는 국제상거래에서 사업상의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유지)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자를 통해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외국공무원에게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가입국 현황**

현재까지 OECD 가입국 등 41개 국가가 본 협약에 따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를 자국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료 심사(peer review)를 통해 각국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2014년 말까지 협약 당사국은 500여명의 개인 및 기업의 해외뇌물사건을 형사 처벌하고 총 54억불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은 총 거래가액의 10.9%, 이윤의 34.5%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이며, 또한 41%의 사례에서 거래가액의 100~200%에 이르는 금전적 제재가 가해진 것으로 드러나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부패척결의 경제적 이점이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 현황**

협약 가입에 따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여 해외뇌물을 규제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 처할 수 있다.



**3) 유엔반부패협약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채택**

● **의의**

유엔이 2000년부터 각국이 연루된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003년 10월 3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반부패 국제협약으로, 가장 광범위한 부패방지협약이다. UNCAC는 부패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 정부가 이를 위해 반부패 기구를 창설하거나 선거·정당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내용**

각국 정부가 광범위한 부패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뇌물과 횡령, 자금세탁 등을 불법화하는 법률을 채택하며, 부패를 지원하거나 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부패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뇌물을 범죄화하는 입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 **가입 현황**

2015년 기준 140개 국가가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비준하여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4) APEC 정상회의의 반부패 선언**

● **의의**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회원국의 자유롭고 공정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APEC 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해 반부패 규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할 것을 동의하였다.

● **주요 내용**

정상들은 부산선언에서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관료 및 개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도피처를 거부하고, 국제거래를 포함해 뇌물에 연관된 자를

기소하기 위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반부패 규정을 만들고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 **현황**

2014년 제22차 및 2015년 제23차 APEC 정상회의는 그 선언문에 반부패 관련 합의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제23차 정상회의의 선언문은 반부패가 경제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을 저해함을 인식하며, 앞서 합의한 반부패 관련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해 책임감 있고 열린 거버넌스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5) 영국 뇌물수수법 (UK Bribery Act)**

● **의의**

2010년 4월에 제정된 영국 뇌물수수법은 뇌물수수에 대한 형벌 법규를 내용으로 하는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이다.

● **적용 대상**

영국 뇌물수수법은 ① 영국 회사 및 자회사 ②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 ③ 영국 회사의 해외 에이전트 모두에 적용되며, 부패범죄 발생 지역을 불문하고 영국과 관계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다.

● **법적 제재**

뇌물 공여와 수수를 모두 제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은 별도 규정으로 다루고 있다. 위반 시 처벌규정은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액의 벌금, 재산 몰수와 이사 직책의 박탈까지 가능한 매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다.

● **영리단체의 부패 예방을 위한 6대 원칙**

- ① 위험에 비례하는 절차(Proportionate procedures)
- ②최고경영진의 결단 및 실천(Top-level commitment)
- ③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④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⑤교육을 포함한 의사소통(Communication including training) ⑥모니터링과 검토(Monitoring and review)

● **특징**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공급망 및 대리인 등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의 부패 행위에 있어서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에 있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가 요구된다. 본 법은 기업의 반부패 노력에 따른 항변권을 보장하여, 기업의 뇌물예방 절차 및 반부패 프로그램을 독려하고 있다.



## 6) G20 정상회의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

### ● 의의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부패방지 정책이 강조되었다.

### ● 주요 내용

‘G20 정상선언문과 반부패 행동계획’에는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 촉구를 비롯하여,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 은닉자산 회복 지원 등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및 부패방지기관의 효과적 기능 강화와 독립성 보장, 민간부문의 국제 반부패 노력 참여 독려 및 민-관 파트너십 증진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각국의 이행상황을 매년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 7) 국제 동향 및 관련 활동

반부패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997년 채택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방지를 위한 협약’과 2003년에 채택되어 2005년에 발효된 최초의 국제협약인 ‘유엔반부패협약(UNCAC)’을 통해 가속화되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으로 반부패 원칙을 도입하여 반부패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제로 부각하는 데 한 획을 그었다.

각국 정부에서도 투명성 증진 및 반부패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2010년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상장된 모든 광산, 석유, 가스 기업들에게 천연 자원 채굴을 위해 각국 정부에 지출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홍콩주식거래소(HKSE) 또한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규정을 도입했고, 2011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10년 세계은행(World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을 비롯한 세계 다자개발은행(MDBs)들은 한 개발은행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사기와 부패행위로 조달계약에 부적격이라고 판단할 경우, 다른 개발은행 또한 이를 반영할 것을 동의했다.

점점 더 많은 국제기구에서 부패척결에 있어 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지하고, 기업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으로 이전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투명성기구(TI),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반부패연대 이니셔티브(Partnering Against Corruption Initiative, PACI)는 전세계 CEO들의 지지선언과 함께 6개월 간 캠페인을 주도하였으며, 동 캠페인으로 민간부문이 유엔반부패협약(UNCAC)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2. 국내 청탁금지법(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 제정 의의

기존 「공직자윤리법」의 특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본 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청탁받은 공직자 등이 신고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 ● 적용 대상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무원(공직자), 각급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 하는자,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자)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됨

### ● 주요 내용

부정청탁 규정은 인·허가, 각종 부담금 부과, 인사 등 청탁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15개로 유형화하고, 예외사유도 7개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역시 이를 수수한 공직자 등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로 제재 받는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 등을 제재한다.

외부강의 사례금과 관련해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를 금지한다.

### ● 적용 기준

- **음식물·선물 등:** 본 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차원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설정됨
-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장관급 이상 : 50만원, 차관급 : 40만원, 4급 이상 : 30만원, 5급 이하 : 20만원)하였으며,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함

● **위반행위 처리 및 신고**

- **위반행위 처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 정지', '전보' 등의 조치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 및 고려사항을 명시해야 함. 그 외에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 **위반행위 신고:** 누구든지 본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하며,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함. 또한 본 법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함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행위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 ● ●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1	2	3	4	5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7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8	9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11	12	13	14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장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안내사이트(<http://isga.modoo.at>)